

#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9 . 9 . 8.

의안번호	제 569 호
------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1. 개정이유

-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장학금의 목적규정 일부 변경(안 제1조)
-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 장학금의 지급정지 항목 일부삭제(안 제9조)
-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조성하는 항목 삭제(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

##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자녀”를 “유공자녀”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제3조 제목중 “장학금의자격”을 “장학생의 자격”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삭제한다.

제6조중 “7퍼센트”를 “7퍼센트이내”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중 “불량할 때”를 “불량하거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이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 제2항중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문교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녀 및 <u>유자녀</u>(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u>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u>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유공자녀</u> ----- <u>뛰어난 중·고등학교 학생</u>----- ----- ----- ----- -----</p>
<p>제3조(장학금의 자격)①~②(생략)</p>	<p>제3조(장학생의 자격)현행과 같음</p>
<p>제5조(선정) ①군지회장이 <u>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u> 다음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p>	<p>제5조(선정) ①----- ----- --&lt; 삭 <span style="float: right;">제</span> &gt; ----- -----</p>
<p>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면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u>7퍼센트</u>로 한다.</p>	<p>제6조(장학생의 정원)----- -----<u>7퍼센트</u>이내----- -----</p>
<p>제9조(지급의 정지) ①(생략) 1.(생략) 2. <u>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u> <u>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u></p>	<p>제9조(지급의 정지)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삭제)</u></p>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u>불량할때</u> 학업성적이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때</p> <p>4.(생략)</p> <p>5.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 <u>한때</u></p> <p>②군지회장은 제 1항의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u>도지 부장에게 보고하고</u>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p> <p>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p> <p>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생략 ②특별회계세입금은 도.군의 일반회계전출금.국고보조금.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p>	<p>3.-----불량하거나-----</p> <p>4.(현행과 같음)</p> <p>5. (삭제)</p> <p>②-----&lt; 삭 제 &gt;-----</p> <p>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p> <p>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lt; 삭 제&gt; -----.</p>